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30

발의연월일: 2024. 10. 9.

발 의 자:황명선·김태년·이정문

김우영 · 김영환 · 차지호

복기왕 · 용혜인 · 이해식

정동영 · 윤종오 · 황정아

문대림 · 홍기원 · 민병덕

이기헌 • 채현일 • 염태영

이강일 · 송재봉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동물의 기증·분양,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단순히 기증·분양되지 않는다 하여 적절한 보호기간 없이 안락사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등록 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현행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가 기증·분양받은 동물을 30일 이상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상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제2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를 삭제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유권 취득 동물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		
	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을 기증하거나 분양하지 아니		
	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		
	터 30일 이상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u>하지 아니하다.</u>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u> </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 <신 설></u>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		
	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		
	<u>한 소유자</u>		
<u>1.</u> ~ <u>18.</u> (생 략)	<u>2.</u> ∼ <u>19.</u> (현행 제1호부터 제1		
	8호까지와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 략)
-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 <삭 제> 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 한 소유자
- 5. ~ 26. (생략)
- ④·⑤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5. ~ 26.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